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가합60742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나205051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가합607421 판결

전문

원고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박경용, 서재민, 허경, 박수진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최수영

변론 종결 2021. 10. 28.

판결 선고 2021. 11. 25.

주문

1. 피고와 C 주식회사[주소 : 서울 강남구 D건물]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2018. 8. 27.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E에게 제1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F중학교와 G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서울 강남구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는 2011. 12. 9. 설립되어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H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자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와 C는 2011. 12. 14. C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인도일로부터 5년간 보증금 2,000,000,000원, 임대료 연 2,100,000,000원에 포괄적으로 임차하여 이를 전대·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C는 원고가 건축하는 아래에 표기된 이 사건 건물을 C가 포괄적으로 임대하여 운영하도록 본 약정계약을 체결한다.

1. 건물명: 도시형 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2. 대지위치 : 서울 강남구 J

3. 대지면적 : 3,882.2㎡(약 1,174.36평)

4. 건축규모 : 지하2층, 지상7층

5. 연면적 : 13,957.17㎡ (4,222.04평)

지하면적 : 5,744.81㎡ (1,737.80평) -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주차장 및 기계실

지상면적 : 8,212.36㎡ (2,484.24평) - 도시형 생활주택(149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건축 과정 및 준공을 거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C가 임대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C에게 포괄적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이다.

제2조(약정의 범위)

본 약정의 범위는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속시설 일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기존 계약과의 관계)

① 원고는 H과 이 사건 제1 약정계약서, 2011. 11. 17. 부속합의서, 2011. 1. 23.

임대(전대)동의서를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제1 약정 제6조에서 H의 권리와 의무는 원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기존 계약에 따른 H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며, 본 계약과 기존 계약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본 계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계약기간은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계약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5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단, 원고는 C의 중대한 계약 위반이 없는 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본 약정의 중대한 계약위반이란 C가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임대료를 3분기 이상 연속하여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제5조(계약의 대가)

① 본 계약의 대가로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임대에 대한 보증금으로 20억 원을 지급한다.

② C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료로 연간 2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대상건물의 전대)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대운영함에 있어 C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인들에게 임대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② 원고는 C가 동의하는 경우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 자신이 임차한 공간을 다른 자에게 전대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제12조(임차인의 보호)

원고는 본계약기간 중에 C가 임차인 또는 전차인 간에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기로 한다. 단, C가 임차인 또는 전차인 간에 체결하려는 계약의 계약기간이 본 약정의 약정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고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 1) 원고는 2018. 8. 10. C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1. 14. 종료되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 2) 원고는 2018. 10. 11. C에 다시 한 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고, 2개월 내에 미납 차임(2018년 1분기에서 3분기 임대료 1,575,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C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 3) C는 2018. 10. 16. 원고에게 원고의 계약해지를 이의 없이 수용하며, 2018. 11. 15.부로 임대관리 및 건물관리업무 등 일체의 업무를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라. 관련 명도소송

원고는 C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월 175,000,00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9. 4. 10. 승소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89131, 이하 '관련 명도소송'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전대차 계약의 체결 현황

C는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 관하여 전차인들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8. 기준 전대차 현황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C는 2018. 8. 27. 피고와 사이에 C의 E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채권 합계 10억 8,000만 원(= 2017. 12. 10.자 1억 3,000만 원 + 2018. 2. 23.자 9억 5,000만 원, 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9. 3. 위

채권양도를 E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E에게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사. 관련 형사소송

C의 대표이사이던 H은 '이 사건 건물의 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등을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임대보증금 등 회사 자금 합계 8,724,414,146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2019. 6.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220), H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2019. 12. 17.

항소기각판결을 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9노1481),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에 대하여 미지급 임대료 채권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는데, 채무자인 C는 원고에 대한 임대료 채무 및 이 사건 건물의 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인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E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 1)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시 C는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 2)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C가 무자력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 3) 또한 원고가 C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전체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1).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207648 판결 등 참조).
-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인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8. 3. 20., 2018. 6. 20. 및 2018. 9. 20.에 임대료 525,0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일인 2018. 8. 27. 이전에 원고의 C에 대한 미지급 임대료 채권 1,050,000,000원(= 525,000,000원 × 2)은 이미 발생하였으며, 미지급 임대료 채권 525,000,000원 역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일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C는 직전 2분기 동안 이미 임대료 지급을 연체하고 있었던 상태로 향후 임대료 지급을 하지 않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이후 2018. 9. 20. C가 원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에게 임대료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미지급 임대료 채권 1,575,000,000원(= 1,050,000,000원 + 525,000,000원)이 모두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C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료 중 2015. 9. 20. 200,000,000원을, 2015. 12. 20. 450,0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C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며, 미지급 연체차임의 지급 및 계약만료 후의 업무처리 등을 위한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하면서도 위와 같은 임대료 미지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점, C가 2015년경에 임대료를 일부 미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C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료 채권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대료 채권을 초과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미지급 임대료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차임 등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 하여 임차인이 그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41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한 원고는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³⁾이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일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시 C는 직전 2분기 동안 이미 임대료 지급을 연체하고 있었고 향후에도 임대료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위 회사는 원고에게 전차인과 체결한 전대차 계약을 원고의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원고가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명도하지 않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11. 15.경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가 원고에게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지 않아 원고에게 위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실제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역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C의 무자력 여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무렵 피고에 대하여 1,000,000,000원, 원고에 대하여 1,57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전차인들에 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합계

5,087,000,000원의 전대차보증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③ 위 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중 2,896,000,000원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C와 각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C는 각 전대차 계약 종료 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대표이사이던 H은 위와 같은 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등을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임대보증금 등 회사 자금 합계 8,724,414,146원을 횡령하여 2018. 8. 27.경에 이미 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이후 C는 실제로 위 각 전차인들에 대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역시 C의 소극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점, ④ C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7. 12. 31. 기준으로 총부채는 14,268,000,000원으로 총자산보다 4,383,000,000원 더 많은 상태이며 총자산 중 5,910,000,000원은 대표이사 H 등에 대한 대여금으로 H은 위 금원을 대부분 임의로 소비하여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와 같이 감사가 이루어진 2017. 12. 31. 이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시인 2018. 8. 27.경까지 추가로 자산을 취득하는 등 C의 재정 상황이 나아졌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5241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대상인 이 사건 각 채권은 C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12. 31. 기준으로 총부채는 14,268,000,000원으로 총자산보다 4,383,000,000원 더 많은 상태로서, 원고에게 2018년도에는 계속하여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무자력의 정도가 중한 편이었던 점, ③ 피고는 C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2018. 2.경부터 지속적으로 지급을 독촉하여 오면서 C의 자력 상황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C는 원·피고 외에도 이 사건 각 건물의 전차인 등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각 채권을 양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C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 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7. 6.경 H이 C의 재정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여윳돈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 10억 4,000만 원가량을 C의 대표자인 H의 계좌로 송금한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는 2~3개월 후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변제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H에게 지속적으로 차용금 변제를 요청한 점4), 피고는 2018. 2. 6.경 H에게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되는거야", "아니 6월말까지 준다 그랬다가 7월 뭐 중순, 7월말, 8월초 (중략) 맨날 이렇게 거짓말만 시키고"라고 말하며 채무변제를 독촉한 점, 피고는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지급을 독촉하여 오면서 C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음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C의 재무상황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의 수익자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이 사건 각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것이며, 원고의 C에 대한 미지급 임대료채권(1,575,000,000원)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양도목적물인 이 사건 각 채권의 합계액인 1,080,000,000원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전체를 사해행위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2) 원상회복의 방법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아직 그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채권을 이미 추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제3채무자인 E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석근

판사강동원

판사남민영

별지

1) 2021. 3. 2.자 준비서면 참조

2) 2021. 3. 2.자 준비서면 참조

3) 2018. 11. 15.부터 이 사건 명도 완료일까지 월 17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4) 2021. 4. 14.자 준비서면 참조